

위탁용역 제안요청서

용역명	「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품질관리」			
용역담당자	주관부서	정책제도연구부	성명	조윤희, 이창훈 (052-703-0823/828)
연구기간	계약체결일 ~ 2021.11.10.		예산액	55,000천원 (부가가치세 포함)

1. 품질관리 목적 및 필요성

- 「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」의 실사 과정을 관리하여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를 얻고자 함

2. 과업 대상 :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

◆ 「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」 개요

(1) 사업체 및 건설현장 조사

- 조사대상 : 7,000개소
 - 제조업 :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체 3,000개소
 - 서비스업 :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체 2,500개소
 - 건설업 :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1,500개소
- 응답대상자 : 안전·보건관리자 등 사업체(건설현장)의 안전·보건관련 업무책임자
- 조사방법 : 전문 조사원의 사업체 방문을 통한 1:1 개별 면접조사
 -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체 조사대상의 25%(1,750개소) 이내에서 비대면 조사(인터넷 조사, 종이설문지 유치 조사) 방법 병행 가능
- 조사내용 : 사업체 특성, 안전보건 시스템, 유해위험 요소 등(붙임 설문지 참조)

(2) 근로자 조사

- 조사대상 :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업체 조사 대상 5,500개소 중 규모별로 사업체를 표본 추출하여 해당 사업체 근로자의 10~40%(4,056명)를 별도 조사
- * 발주처(연구원)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를 섭외(3~5개소)하여 근로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, 추가 실시 가능

구분	제조업/서비스업			
	계	20-49인	50-99인	100-300인
비율		10~40%	15~40%	10%
사업장 수	268	163	55	50
근로자 수	4,056	1,956	1,100	1,000

(2) 용역 수행 기관 및 기간

- 조사기관 : (주)한국갤럽조사연구소
- 계약기간 : '21.4.7. ~ 11.10. [현장 조사기간 : 7월~9월(예상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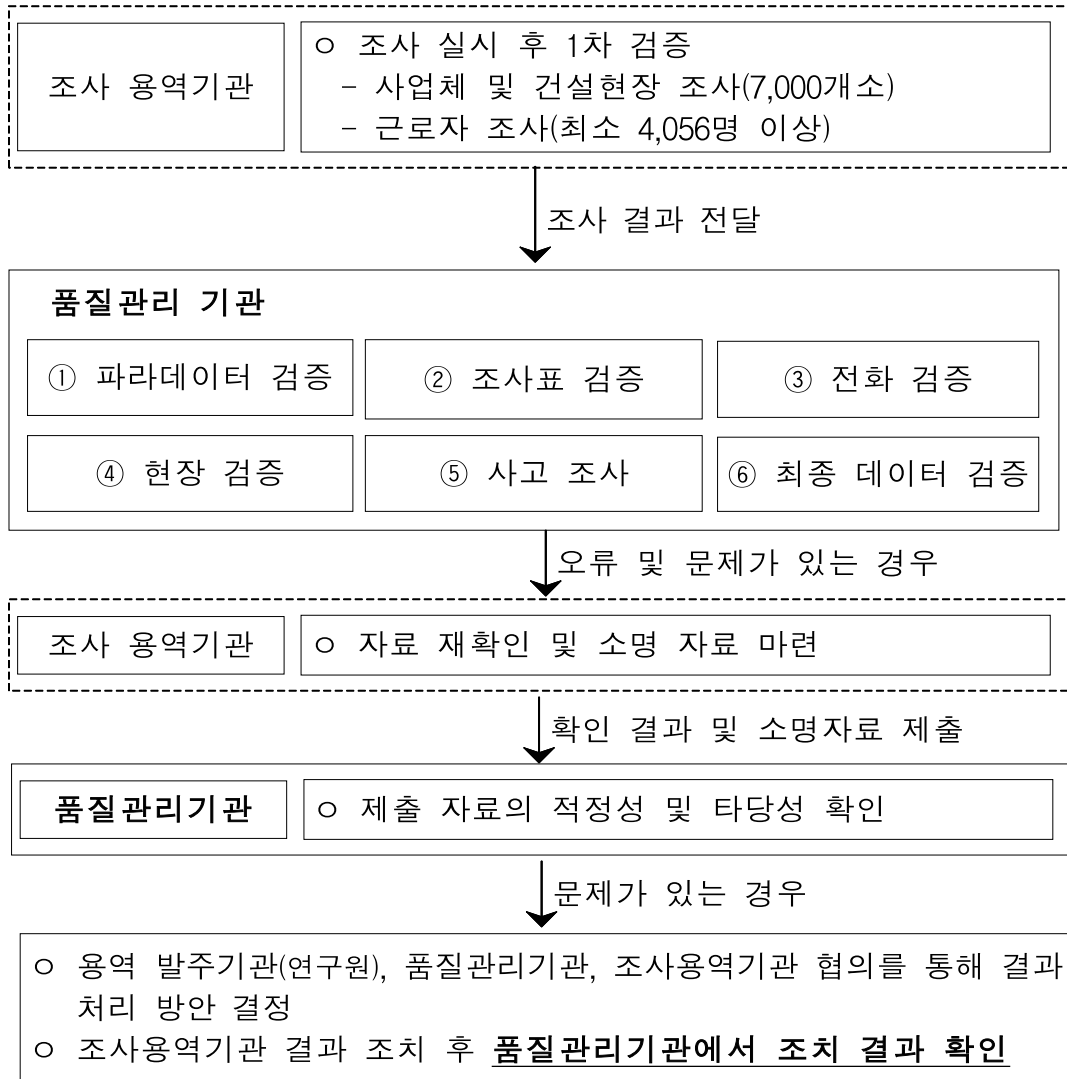
3. 주요 과업 내용

- 본 용역은 조사 용역업체에서 실시하는 현장 조사 진행 과정의 적절성, 응답지 입력, 응답 데이터의 신뢰성 확인 등 현장조사 과정에서부터 최종 데이터 생산까지의 과정을 관리하는 것임
- 조사 용역업체에서 조사 후 1차 검증*한 내용에 대하여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재검증 실시

* 조사 용역업체에서 실시하는 1차 검증 사항

- ① 데이터 검증 : 무응답, 문항 간 응답이 일치하지 않는 로직 오류 등을 지역별 실사팀의 에디터가 확인하여 수정
- ② 모바일·전화 검증 : 조사 후 응답자의 모바일 회신 또는 전화 확인을 통해 지침대로 조사가 수행되었는지 확인(조사원별 40% 이상의 자료가 문제가 없을 경우 조사원의 전체 조사 자료가 문제없다고 인정)
- ③ 파라미터 검증 : 조사원이 사업장 방문시 핸드폰으로 기록한 자료를 기초로 응답자 접촉 진행 과정(방문 일시, 방문 횟수), GPS상의 사업체 위치, 사업체 담당자 명함(또는 회사 홍보물)과 건물사진 등을 확인

- 재검증 실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 용역업체에 오류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, 재발 방지 조치 마련
 -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중 직접 전화 또는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확인 후 조치 방안을 연구원에 제시
- 조사 용역업체에서 입력한 종이설문지 자료의 오류 데이터 확인 후 조치
- 민원 또는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조치 마련
- 조사 전 기간에 걸쳐 적절한 비율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도율 관리
- 전체 데이터에 대한 오류 및 적정성 검증



[표] 품질관리 용역 업무 처리 절차

4. 과업 상세 내용 및 최소 검증 기준

- 입찰 업체는 연구원에서 제시하는 과업 내용별 검증 방법 및 최소 검증기준*을 고려하여

* ‘최소 검증기준’은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원에서 제시하는 최소 요구사항으로, 입찰 업체는 최소 검증기준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

-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를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품질관리 방안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바람

※ 제안하는 방안이 조사 품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, 연구원에서 제시하는 검증 방법 및 최소 검증 기준을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

① 파라데이터 검증

- 조사원이 사업장 방문 시 핸드폰으로 기록한 정보를 분석하여 조사원칙 준수 여부 확인
 - 검증 대상 : 전체 조사완료 건수
 - 최소 검증 항목
 - GPS 기록과 조사 대상 사업장의 일치 여부
 - 등록된 사업장 정보(명함, 사업장 홍보물, 사진)의 정확성
 - 방문 시간과 조사 시간, 이동 시간을 반영한 1일 적정 조사 건수의 적정성
 - 방문 횟수와 방문 기록을 고려한 표본 대체의 적정성

② 조사표 검증

- 조사 용역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종이조사표와 조사표를 전산 입력한 데이터의 정확성 확인
 - 사업체 대상 조사 : 전체 조사의 10%(700개)를 조사 기간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조사표 전 문항을 전산 입력 후, 조사 용역기관에서 입력한 자료와 비교하여 오류가 있는지 확인
 - 근로자 대상 조사 : 조사 완료된 전체 조사표(4,056명~6,000명) 전 문항을 전산 입력 후 조사 용역기관에서 입력한 자료와 비교하여 오류가 있는지 확인
 - 조사 응답 값의 이상치 등 오류 확인
 - 검증대상 : 전체 조사완료 건수
 - 문항별 오류 검토 항목에 대해 검증 실시(검토 항목은 연구원과 협의 후 결정)
 - 조사표 문항 간 응답 값의 불일치 및 이상치
 - 예) 전체 종사자는 20명인데, 교대근무자는 23명인 경우, 관리감독자가 없다고 응답했는데 관리감독자에 대한 질문에 응답을 한 경우 등
 - 조사표의 응답 값*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법 규정이 다른 경우
- * 조사표에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문항은 안전·보건관리자, 산업안전보건위원회, 안전보건관리담당자, 관리감독자, 특수건강진단, 작업환경측정 등이 있음

예) ①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체인데 선임하였다고 응답한 경우

②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체인데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

(참고) 조사 대상에서 안전·보건관리자 선임 기준

*** 조사대상 중 ‘안전관리자’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건설현장**

- 공사금액 80억 미만(토목공사는 150억 미만) ; 2021년 7월 1일 이후

*** 조사대상 중 ‘보건관리자’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건설현장**

- 공사금액 800억 미만(토목공사는 1천억 미만)

*** 조사대상 중 ‘안전관리자’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50인 이상 사업체**

- 75. 사업 지원 서비스업 :

고용 알선업(7511), 인력공급업(7512), 여행사업(7521),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(7529),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(7531),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(7532),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(7533), 사무 지원 서비스업(7591),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(75991), 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(75992), 신용 조사 및 추심 대행업(75993), 포장 및 충전업(75994),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(75999)

*** 조사대상 중 ‘보건관리자’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50인 이상 사업체**

- 75. 사업 지원 서비스업 : 세부 업종은 위와 같음

- 세탁업(9691)을 제외한 「96. 기타 개인 서비스업」 : 미용,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(961),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(9692), 음식점업(96991),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(96992),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(96994),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(96994), 애완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(96995),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(96999)

③ 전화 검증

○ 조사 사업체, 현장에 직접 전화 확인을 통해 허위 조사 가능성에 대한 확인과 조사 응답 값이 정확히 조사된 것인지 확인

- 검증대상

- 사업체 조사 : 전체 조사의 15%(1,050개)
- 근로자 조사 : 사업체별 2명(536명)

- 검증대상의 결정

- 파라미터 검증과 조사표 검증 결과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사원의 자료
- 조사 용역업체의 소명 자료 중 전화 확인이 필요한 경우

④ 현장 검증

- 조사 사업체,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허위 조사 가능성에 대한 확인과 조사 응답 값이 정확히 조사된 것인지 확인
 - 검증대상 : 사업체/현장 조사 중 30개소
 - 검증대상의 결정
 - 파라미터, 조사표, 전화 검증 결과와 조사 용역업체의 소명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
 - 현장 검증을 할 특이 사업장이 없는 경우, 자체적으로 선정한 오류 기준에 따라 오류가 많은(하위 5%) 조사원이 수행한 조사구를 중심으로 현장 확인

⑤ 현장 조사 진행률 관리

- 지역별 조사 진행률을 주 단위로 확인하고, 진도율이 특이하게 높거나 낮은 지역·조사구 또는 조사원이 있는 경우 원인 확인

⑥ 현장 조사 사고 관리

- 허위조사 등 민원 발생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, 연구원이 조사 요청 시 사실 확인
- 조사 용역기관에서 실시한 조치 사항 및 재발방지 대책의 작동 여부 확인

⑦ 최종 자료 검증

- 조사 완료된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량(최대, 최소, 평균, 중간값 등)을 이용한 이상치 확인
- 지난 9차 조사 결과 또는 조사 내용과 관련한 유사한 통계 결과, 신문 보도 내용 등을 이용하여 유사 통계 결과와 비교하고 특이점이 있는지 확인

4. 제안서 작성 착안 사항

- 입찰 업체는 과업 내용의 「최소 검증 기준」 이상으로 각 과업 수행 내용별 구체적인 수치 및 방안 제시
- 과업 내용 외 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, 검증 최소기준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제시 가능

5. COVID-19에 따른 계약 특이 사항

- 본 용역은 “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” 용역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는 용역으로 실태조사 용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
- “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” 용역이 COVID-19로 인한 정부 시책 등으로 인한 조사 중단 등 조사 용역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현장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
 - “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” 용역은 계약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
 - “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” 용역의 계약이 연장될 경우 본 용역의 계약 종료일은 “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” 용역의 계약 종료일로 연장됨
 - 이 경우 계약 금액, 과업 내용 등의 변경 없이 계약 종료일만 변경함

6. 평가 배점 및 기준

- 제안서는 기술능력(80점)과 입찰가격(20점)을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며, 기술능력평가 항목은 연구계획(연구목적 이해도, 연구내용 적절성, 연구방법의 타당성), 연구역량(연구진 구성 및 수행능력, 연구실적), 연구결과(성과)활용도 등의 평가지표로 평가함.
- 제안서 평가결과,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%(68점)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.
 - ※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자, ②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5%(68점)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수 없다.
-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. 다만,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.
- 협상절차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과제 수행과 관련된 세부내용에 대한 조정작업을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한다.
-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.

7. 기타사항

- 본 용역은 「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」 용역의 “사업체 7천 개소의 조사표 검증” 과 “근로자 대상 조사표 검증” 완료를 계약 대상으로 함
-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있어야 하며, 참여 연구진 인력구성은 해당 연구과제 수행능력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하되, 세부 역할분담(책임소재)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함
-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조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거나 상당부분 통계분석을 요하는 경우 조사 통계결과의 질적 수준(조사 통계품질 및 신뢰성) 향상을 위해 조사통계 전문가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여야 함.
- 실태(설문)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사업장 범위, 목표조사 수량의 최대 이행 가능치 제시 등의 내용은 연구용역 기술평가의 대상이 되므로 제안계획서 작성 시 연구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.
-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연구제안계획서 및 향후 연구수행 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으로 귀속됨.
- 위탁연구책임자가 공단의 위탁연구를 중복하여 수행할 경우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.

위탁연구용역 특수계약조건

[연구과제명 : 제10차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품질관리]

1. 연구회의 개최

- 위탁연구용역 연구책임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(이하 '연구원')의 연구 상대역과 함께 연구방향 설정이나 전반적인 연구진행 협의를 위해 **개시회의**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.
- 위탁연구용역 연구책임자는 연구원 연구상대역, 필요시 해당 연구과제 전문가 등이 참석한 연구회의를 월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.
- 연구 개시회의, 중간평가, 최종평가 시에는 위탁연구용역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진이 참석하여야 하며 사유가 있을 시에는 참여연구진이 연구책임자를 대신하여 발표할 수 있다.
- 연구원의 연구상대역이 연구결과에 대한 실효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안전보건관계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**간담회(또는 공청회)** 개최를 요청하면, 위탁연구용역 연구책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2. 계약기간 연장

- 계약기간 연장은 연구원에 의해 그 필요성을 인정받는 경우 1개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연구용역 연구책임자는 최종평가보고서 제출일 1개월 전에 연구기간 연장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설명하여야 한다.

3. 연구평가 및 제출

- **중간평가**는 연구기간 3분의 2이내에 실시하며, 중간평가용 보고서(10부)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. 평가 결과, 연구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수행 내용조정, 연구범위·연구자·연구기간·연구방법 변경, 연구중단,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**최종평가용 보고서(10부)**는 최종평가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, 최종평가는 연구원에서 정한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평가를 받는다. 위탁연구용역 책임자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 내에 최종보고서(50부)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※ 제작방법 등은 우리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며 위탁연구용역 책임자는 최종 보고서 인쇄 전에 연구상대역에게 **검수 확인 후 인쇄**하여야 한다.
 - ※ 연구수행 중 연구원 지침 변경 등으로 인해 평가 등의 일정이 조정되는 경우 보고서 제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.
- 최종보고서 제출 시 조사 분석이 있는 경우에는 설문지와 조사결과 원시자료(DB- Excel 형태, DB 변수설명에 대한 Document 등)를 제출하고, 최종보고서는 원본워드 파일 및 PDF 변환 파일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.

4. 언론·학회발표(게재 포함) 및 판권

- 위탁연구용역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 완료 전에 연구결과가 언론 등 외부기관에 배포·유출되거나 또는 학회에 발표(게재 포함)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원 연구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.
 - ※ 발표 또는 학술지 게재 등 연구결과 활용 시에는 연구상대역을 공동연구자로 명시하고, “산업 안전보건연구원 학술용역”에 의거하여 수행된 연구보고서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.
- 위탁연구용역 계약종료 후에도 연구결과에 대하여 언론보도 추진 등의 사항 발생 시 연구원(연구부서의 장)에게 사전 협의해야 한다.
- 연구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과 최종 연구보고서 판권은 연구원에 귀속되며, 조사된 자료와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, 부득이 외부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원 연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5. 기타

- 위탁연구용역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연구원이 제시하는 자체규정에 의한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및 기준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의 검증, 보고, 후속조치 등에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연구결과가 연구과제 평가위원회에 의하여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본 계약은 해지 될 수 있으며, 연구비에 대하여 회수 및 미지급 할 수 있다.(위탁연구용역 계약서 제13조)
- 연구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과 최종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* 및 연구부적절행위**가 발견된 경우 그 심각성에 따라 연구원은 위탁연구용역기관에 대하여 위탁계약의 해지 및 향후 연구용역 참여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 연구부정행위 : 연구의 제안, 연구의 수행,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, 게재 등에서 행하여진 표절, 위조, 변조, 부당한 저자 표시, 자기표절, 이중게재 등

** 연구부적절행위 : 연구자료를 부당하게 확보·활용, 부정행위 묵인·방조·은폐, 연구대상 권익 침해, 위반 제보자 보복행위, 연구부정·부적절행위에 검증 조사 고의방해 등

2021년 월 일

위탁연구용역 수행기관 _____

위탁연구용역 책임자 성명 _____(인)